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

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

2020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시사점 ····· 3

Ⅲ. 추진전략 ····· 6

Ⅳ.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····· 7

1.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····· 7
2.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····· 10
3.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····· 12
4.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····· 14

Ⅴ.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····· 16

Ⅰ. 추진배경

1. 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필요한가?

❖ **(필요성)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의 가속화**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**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**

➪ 새로 형성되는 시장의 **공정한 질서**를 마련하기 위해 **정책적 대응 시급**

❖ **(경과) 「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(일자리위)」, 「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委(경사노위)」** 논의, **노사 등의 제안**을 바탕으로 **관계부처 TF**에서 대책 마련

* '20. 11~12월, 전문가, 노사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□ **(플랫폼 종사자의 의의)** 일반적(광의)으로 **플랫폼*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**

* 플랫폼을 기능 및 역할에 따라 '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'과 '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'으로 구분 가능 → 광의는 두 유형 모두를 포함

○ **협의**로는 **일(jobs, tasks)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**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

* 미국('18.): ①단기 일자리, 또는 일감을 구하기 위하여 웹이나 모바일앱 사용, ②앱을 통하여 대가를 받으며, ③일을 할지 말지 선택가능, ④대면/온라인으로 과업 수행

□ **(플랫폼 종사자의 증가)** **현재는 취업자의 일부**에 불과하지만 **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**될 것으로 전망

* 유럽: 플랫폼 일자리가 주업인 사람은 취업자의 2.3%이나 부업 포함시 10% 상회('18.)

○ 특히 **코로나19로 인해**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**플랫폼 종사자 역시 더욱 급증**할 것으로 예상

□ **(플랫폼 일자리의 明暗)** **자율성의 극대화,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, 노동생산성의 향상** 등 긍정적 영향 有(ILO)

○ 그러나 자율성의 이면에는 **불안한 고용 및 소득, 불완전한 사회안전망**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,

- 특히 우리의 경우 **취약한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**됨에 따라 오히려 **보호받지 못하는 역설 발생**

* 기술발달은 **극단적인 분업화와 거래비용의 축소**를 가져와 일자리(job)가 **작은 과업(tasks)**으로 나뉘고 **고용의 경계가 모호**해지는 결과 초래(OECD)

2. 보호의 방향: 기존 제도의 "사람 중심" 개편

□ **(유형별 정책수요)** **웹기반형**과 **지역기반형**으로 구분되며, 유형별로 **실태, 정책수요 등이 상이**(ILO, '18.)

○ 유형별로 **분야**(디자인·번역 등vs배달, 가사 등), **전업 여부**(부업vs전업), **운영형태**(3면 관계vs소속 업체(agency)가 있는 4면 관계) **상이**

○ **공통적**으로 **표준계약서 등 법제화, 법률지원**을 필요로 하나,

- **가장 필요한 정책이 상이**(표준계약서등 법제화vs불공정거래 방지)하고, **지역기반형**은 **4대보험 적용, 근로자로 인정 등**을 요구

[플랫폼 일자리의 유형]

	웹기반(web-based)	**지역기반**(local-based)
의의	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	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
분야	디자인, 마케팅, 번역, IT 개발 등 전문분야	배달, 가사 등
전업or부업	주로 부업	전업, 부업 혼재
운영 형태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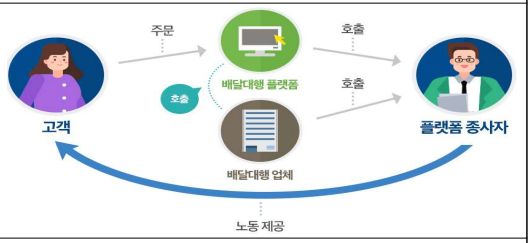
정책 수요 ('20. 한국노동사회연구소)	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, 불공정거래 방지, 세무·상담 지원,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	불공정거래 방지,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, 4대보험 적용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

□ **(보호의 방향)** 유형별로 **실태가 상이**하고 **취업형태도 다양**해 근로자 중심의 **現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체계하**에서 **충분한 보호에 한계**

○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, 플랫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**공정성 제고**와 **종사자의 사회적 보호**에 초점을 맞출 필요

* 특히 공정위는 입점업체-플랫폼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해 「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」 제정 추진중으로 재화시장의 공정질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필요

☞ 새로운 성장 동력인 **플랫폼 산업과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** 조성 절실
⇒ 現 제도를 **"사람 중심" 으로 개편**하여 이를 뒷받침할 필요
* ILO('19.): 기술발달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**"사람 중심"으로 변화** 필요

II. 플랫폼 종사자 현황 및 시사점

[1] 플랫폼 종사자 규모 및 유형

* 노사 및 전문가가 협의('20.8. 일자리委)한 정의를 바탕으로 9만명 대상 조사(노동硏)

□ **(규모)**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**광의의 플랫폼 종사자**는 **약 179만 명**(취업자의 7.4%)

* 지난 3개월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 중 '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'은 약 183만 명이며, 이 중 상품판매를 위해 활용하는 사람은 3.8만 명

* 독일('18.):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의 12%가 플랫폼노동을 수행한 경험 有

○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**협의의 플랫폼 종사자**는 **약 22만 명**(취업자의 0.9%)

* **미국**('18.): **전체 취업자의 1%**에 해당하는 161만명으로 추산

* **한국고용정보원**('19년): 취업자의 1.7%~2.0%(50만명 내외)로 구인구직앱을 활용하는 음식점보조·서빙, 청소·건물관리, 사무지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차이가 나타남

<플랫폼 종사자 규모('20. 노동연구원)>

	취업자	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			
		전체	상품거래 등	플랫폼 종사자	
				광의	협의
비율(%)	100	7.6	0.2	7.4	0.92
추정규모(만명)	2,400	183	3.8	179	22.3

□ **(성별·연령)** 협의의 종사자 중 배달기사 비중이 높아 **65.3%는 남성**

○ **20대, 30대, 40대가 전체의 75%**를 차지하며, 50대도 17.3%로 고르게 분포하여 **플랫폼 일자리가 전 연령으로 확산**

- 특히 전체 취업자 연령분포와 비교시 플랫폼 일자리에는 **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더 많이 종사**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* '19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: 50대와 40대가 절반 이상(54%)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젊은 층 비중이 높게 나타남 <50대(33%), 40대(22%), 30대(16%), 15~29세(11%)>

<플랫폼 종사자(협의)의 성별·연령별 분포(단위: %)**>**

구분		플랫폼 종사자	전체 취업자
연령별	20대	21.2	13.3
	30대	26.0	19.5
	40대	27.6	23.3
	50대	17.3	23.6
	60세 이상	5.4	19.8

□ **(유형)** 협의의 종사자 중 **지역기반형(77%)**이 웹기반형(23%)의 3배 이상이며, **배달기사**가 가장 많음(52%) * 외국은 웹기반형이 다수, 배달은 소수

○ 유형별로 직종도 상이하여 웹기반은 단순작업, 창작, IT 순이나 지역기반은 배달, 기타, 전문서비스 순

○ 플랫폼 종사자의 **49.7%**가 해당 일이 **주업**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**지역기반형은 주업 비율이 53.2%**(웹기반 37.8%)로 높게 나타남

* 한국고용정보원('19년): 주업 41.0%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업이 크게 증가

<플랫폼 종사자(협의) 유형(단위: %)**>**

웹기반(web-based)		지역기반(local-based)	
단순작업	34.0	배달	67.8
창작	26.2	기타	13.0
IT	19.8	전문서비스	11.8
전문서비스	15.0	가사	5.0
기타	5.0	주문제작	2.4
소계	100.0	소계	100.0

주업·부업 여부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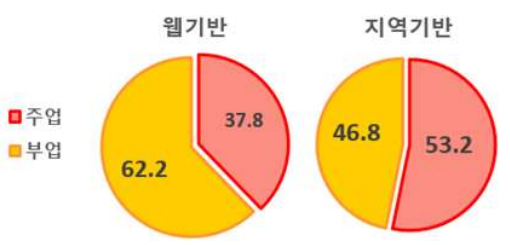

[2]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(협의 기준)

□ **(근무현황)** 주·부업 여부, 유형별로 근무일,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, 이에 따라 **주업, 지역기반의 소득이 더 높음**

<플랫폼 종사자(협의) 근무 현황>

	주·부업별		유형별	
	주업	부업	웹기반	지역기반
근무일(일)	19.4	10.3	14.1	15.1
日 근무시간(시간)	8.7	4.3	5.3	6.9
月 소득수준(만원)	238.4	54.8	116.1	154.9

□ **(종사기간)**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**올해 해당 일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전체의 49%**로 다수(부업의 경우 65%로 높음)

* 다만, 주업은 '18년 이전에 해당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이 41.2%로 높게 나타남

□ **(업무수행)** 전반적으로 **본인이 업무수행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**하는 비율이 높지만, **가격결정권의 유무,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**

❶ **(웹기반형) 가격결정을 주로 본인**이 하는 등 **자율성이 높고**(66%), **성과평가**를 통해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높음

❷ (지역기반형) 가격결정 주체가 플랫폼, 본인, 소속회사 등으로 다양하고,

- 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다수(56%)로 자율성 정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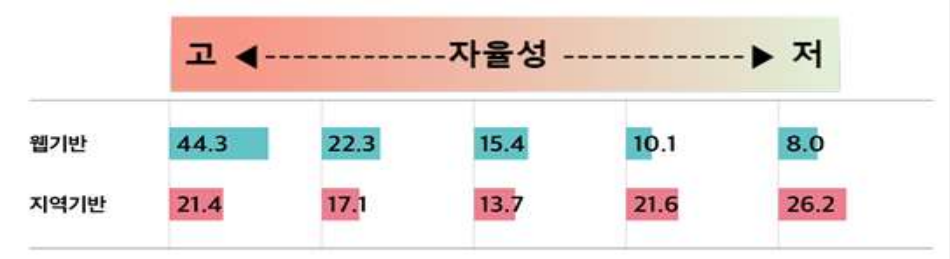

❶ **(업무선택)** 웹기반형, 지역기반형 모두 본인이 선택한다는 응답이 다수(60% vs 58%)

❷ **(일하는 시간)** 웹기반형, 지역기반형 모두 본인이 정한다는 응답이 다수(89% vs 63%)

❸ **(가격결정 주체)** 웹기반형은 본인(47%), 플랫폼(38%), 고객(12%) 순, 지역기반형은 플랫폼(43%), 본인(23%), 소속 업체(20%) 순

❹ **(평가시스템)** 평가시스템이 있다는 비율은 웹기반형 55%, 지역기반형 44%이며, 평가 결과는 일의 배정에 활용된다는 비율이 다수(웹기반형 70%, 지역기반형 45%)

□ **(계약관행 및 사회보험)** 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고, 표준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률이 낮으며, **불공정한 계약관행**도 존재

* (계약서) 근로계약서(18.2%), 기타 계약서(32.7%), 없음(65.4%) <'19. 한국고용정보원>

○ 근로자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**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**가 발생

* (가입률) 건강보험(70.1%), 국민연금(52.6%), 고용보험(34.4%) <'19. 한국고용정보원>

[시사점]

◇ **(광의와 협의) 광의의 종사자** 179만 명은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**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**

⇒ 또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**협의의 종사자**에 대해서는 **플랫폼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이 강화**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내용도 포함

◇ **(플랫폼 종사자의 다양성)** 주·부업 여부, 유형별로 **근무일·근무시간 등이 상이**하고, **업무수행의 자율성 등이 다양 → 고용상 지위도 다양**

⇒ 다양성을 고려한 **권익 보호, 사회안전망 확충,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, 생태계 조성** 등 중점 추진 필요

III. 추진전략

01 목표

"사람 중심" 플랫폼 경제

플랫폼 산업과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

02 보호 대책

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

1.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
2. 공정한 계약 및 관행 형성
3.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형태 명확화

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

1.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
2.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

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1. 일터에서의 안전 보장
2.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

1. 온라인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
2. 이해당사자 간 대화·협력 촉진
3. 정부의 지원

03 지원 입법

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제정) +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제정)

- 고용정책기본법 (개정)
- 직업안정법 (개정)
- 근로복지기본법 (개정)

Ⅳ.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

1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

◈ (문제점) 플랫폼 등장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심화,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

– 또한 전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지 않고, 배달·대리기사 등 분야별로 불공정한 관행 등 문제제기 有

* 배달, 대리 플랫폼社 점검 결과, 종사자에게 불리한 책임 부담, 거래의 중요 부분 임의변경 등 불공정 사항 확인

☞ (추진방향)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과 함께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분야별 불공정관행 개선

[1] 신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(가칭 "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")

1 **(기본 방향)**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우선임을 명확화

○ 입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 후 추후 확정

2 **(기본적 노무제공여건 보호)** 최소한의 규율로서 '보호입법' 마련 ('21. 1/4분기)

* (주요 내용) 플랫폼 종사자 활용시 플랫폼기업(例 배달대행플랫폼 등),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(例 배달대행업체 등)가 지켜야할 사항 등 제시 등

○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,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여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

3 **(정부의 책무)**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화추이 확인하고,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
* (주요 조사내용) 규모, 유형(웹기반/지역기반 등), 특성(연령, 성별 등), 고용형태 등

○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,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,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 병행

[2] 공정한 계약 및 관행 형성

1 **(표준계약서 제정·활용)**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지속 개발·확산 추진

* 표준계약서는 직종별 특성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, 표준도급계약서 등으로 다양
현재 SW프리랜서, 배달기사, 대리기사, 퀵기사 등을 포함한 **16개 직종** 보급

○ **(제정)**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**제정 지속** 추진

- 배달업의 경우 **적정 배달료 형성**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시토록 규정한 **「배달대행 위·수탁 표준계약서*」 확산** 추진

* 노사간 논의를 거쳐 표준계약서(안) 마련하고 도입 협약 체결('20.10.)
↳❶불공정거래행위 금지, ❷종사자 안전관리 강화, ❸종사자 권리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규정

○ **(활용)**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**실태점검** 추진

* (배달) 국토부·고용부·공정위·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표준계약서 실태점검 추진('21.~)
(문화예술) 현장(관련 협회·단체 등)+정부+지원기관(예술인복지재단 등) 특별전담반 운영

- **정부지원사업**과 연계하여 표준계약서 활용 시 **인센티브** 제공

* (배달)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시행 이후 사업자 서비스평가 등에 반영
(S/W) 공공발주사업 각 단계별 활용여부 점검, 공공SW 사업 기술성 평가 가점 부여

2 신규 **(컨설팅 도입)** **개별 기업** 대상 **표준계약서 활용** 지원, **종사자 처우개선** 컨설팅 등 실시(「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」, '21. 신규)

<1단계>		<2단계>		<3단계>		<4단계>
사업장 발굴 및 고용구조 기초 진단 (250개소)	⇨	고용구조 개선 희망 사업장 컨설팅 (50개소)	⇨	기업의 자율 준수	⇨	평가 및 우수 사업장 포상 등 실시
<노사단체 등>		<전문가>		<기업>		<지방관서>

* **❶고용형태 확인**(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판단) **❷근로자성 인정시**(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) **❸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**(표준계약서 활용 등 컨설팅)

3 신규 **(배달업 공정거래 기반 마련)** **배달업 제도화**를 위해 **인증제** 우선 도입(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정), **시행 결과**를 바탕으로 **등록제 법제화** 검토('21.上 방안 마련)

○ **배달·대리기사**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의 계약서 **실태점검 및 자율개선 권고** 등 불공정조항 개선 유도(~'21.上)

* (1단계) 배민라이더스·요기요플러스·쿠팡이츠 등 플랫폼社 대상 점검 완료('20.12.) →
(2단계) 생각대로·바로고·부릉 등 주요 배달대행업체 등 점검 추진('21.上)

[3]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형태 명확화

1 신규 **(고용형태 자문기구)**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 등으로 **오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**하기 위해 판단 체계 마련

* 현재 기술발달 등으로 동일 직종에서도 사업주의 지시·감독의 정도·방식 등이 상이하여 고용형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→ 오분류 가능성 등 문제제기 多

**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 적용

○ 전문가 중심의 **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 추진**('21.)

* 플랫폼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형태 구분 방법의 검토 및 제시,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고용형태 판단 관련 자문의견 제시 등의 역할 수행 여부 등 검토

< 해외사례 >

▲ **(美)** 州 단위에서 근로자오분류방지법을 제정(North Carolina)하거나 오분류시 신고할 수 있도록 별개의 위원회를 운영(코네티컷 등)하는 사례 有

▲ **(英)** ACAS에서 고용형태 구분 방법을 제시하고 화해, 중재 등의 사건에서 일차적 판단, Help-line을 운영하여 종사자나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

2 **(근로감독관 역량 강화)**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·역량이 중요하므로 **채용·배치, 교육훈련, 경력관리** 등을 개선

* (채용·배치) 채용시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, 중견 감독관 확충
(교육훈련) 3개월 이상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 장기 전문과정 도입
(경력관리)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급 이하까지 확대(現 5급 이상만 적용)

3 신규 **(사회보험 자격확인)** **산재보험**은 **고용형태**에 따라 적용여부, 보험료 부담 주체, 수급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**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 검토**

* **(고용보험)** 현재 **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**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도 **활성화 방안 마련**

< 해외사례 >

▲ **(英)** 피보험자격 판단이 어려울 경우 **국세·관세청의 고객서비스팀**(Customer Service Team)에 문의하고 **고객서비스팀은 서면의견서 제시**(법적 구속력 無)

▲ **(獨)** 외관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**연방연금보험공단에 지위 확인소 설치,**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조사 후 결정(**법적 구속력 有**), 이의제기 가능

2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

◈ (문제점)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고,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사회보험 가입률 낮은 상황 → 각종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

* 사회보험 가입률(%, 여정硏): 국민연금(18.9) 고용보험(16.8) 건강보험(직장)(17.9) 산재보험(17.9)

☞ (추진방향) 근로자 중심 산재보험·고용보험을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

[1]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

1 **(전국민 산재보험 적용)**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고(14개 직종)의 경우 **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**('21.7. 시행)

* 질병·육아 등을 사유로 하는 휴업(1개월 이상)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가능

○ 특히 **現 전속성 요건을 폐지**하고, 직종·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**적용·징수 체계** 등을 **마련**('21.1분기 산재보험법 개정안 마련)

* (현행) 산재보험법상 '주로 하나의 사업'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가능
→ (개선) '다른 사람의 사업'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·플랫폼 종사자 전반 확대

- **적용 확대**를 위해 **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업체** 간 종사자 **정보 공유 협약 확산**(現 1개사 → 주요 배달플랫폼社)

* '20.9. 배달플랫폼社인 모아플래닛 소속 종사자 정보를 복지공단에 제공하는 협약 체결

2 **(전국민 고용보험 적용)** 플랫폼 종사자 등 **고용보험 적용, 소득감소·실직 위험**에 안전망 제공(「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」 마련, '20.12.)

○ **예술인**('20.12. 시행)·**특고*** 적용('21.7. 시행) → 장기적으로 **다양한 고용형태 포괄**하는 **소득기반 제도로 전환 추진**

*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, 관리가능성,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

- **영세사업주*** 및 **플랫폼**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부담 완화를 위해 **보험사무 대행비용 지원** 확대

* 특고 사업주는 지원요건 판단 시 특고 종사자 수 제외 → (예: 배달대행업체) 계약한 배달기사 수와 관계없이,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지만 판단

[2]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

1 신규 **(정부 지원)**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을 **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*로 확대 → 생활안정자금 융자**** 등 복지사업 지원

* (개정) 노무제공자+산재보험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('20.12.8. 개정법률 공포)

** (생활안정자금 융자) 혼례비, 장례비 등을 저리(연 1.5%)로 1인당 최대 2,000만원까지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

2 신규 **(플랫폼 기업 지원)** **플랫폼 기업**이 플랫폼 종사자의 **퇴직공제** 등 복지증진을 위한 **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**

* '21. 1/4분기. (가칭) "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 근거 마련 → '21.上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논의 등 → '22년 도입 추진

○ **(운영)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**하고, 플랫폼 종사자 퇴직시 **퇴직공제금 지급**

*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,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도 병행

○ **(정부지원·감독) 근로복지진흥기금**을 통해 공제회의 **복지사업 등 지원** 등 검토('21.3.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마련)

- 공제사업에 대한 **철저한 지도·감독**을 통해 수혜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에 노력

< 건설근로자공제회('97년~) 사례>

▲ **(퇴직공제 가입대상)** 건설일용근로자(초단시간근로자, 상용직 등 제외)
▲ **(재원)**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('20년 1일 5천원)
▲ **(복지사업)** 단체보험, 장학제도, 대부금신청 서비스 등
▲ **(정부지원)** 취업알선 및 기능향상 지원 등 위탁사업 수행시 지원

3 신규 **(사업자 등 지원)** 배달기사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**사업자 공제조합***의 법적 근거 마련('20.10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旣발의)

* (주요 사업) 사고로 생긴 ①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, ②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, ③배달기사의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등

○ 공제조합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업계·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**공제조합 설립·운영방안** 마련('21. 연구용역)

3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◈ (문제점) 배달기사 등 업무량 급증에 따라 사고 위험성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, 산안법상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고,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 보험 가입률 저조

* 이륜차 보험가입 현황: 전체 등록 223만대(추산) 중 보험 가입은 98만대(44%)에 불과('19.)

* 배달기사 가입 보험료: ('18.) 118만원 → ('19.) 154만원 → ('20.上) 188만원

☞ (추진방향) 플랫폼 일자리의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방안을 마련하고,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기사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

[1] 일터에서의 안전 보장

1 신규 **(플랫폼 일자리의 산재예방)** 플랫폼 종사자의 **안전보건 실태조사*** → **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수립**('21년말)

* 주요 직종별 근무형태,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 등을 파악

○ 「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」을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화 방안 검토(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 추진)

2 **(이륜차 안전 확보)** 배달기사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앱 연계, 사고발생 위험지역 알림 등 **"정보공유플랫폼**(Open-API*)**" 보급**('21.~)

* (기능) 기상(폭우, 폭설 등) 및 조건별(사고 다발요일 등) 맞춤형 안전교육영상 송출

3 **(이륜차 정비제도 개선)** 실태파악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**표준 공임제 권고안 마련**('21.上, 이륜차정비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)

* 현재 일반차량은 등록제, 표준공임제도 운영하고 있어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 공개 의무화 ↔ 이륜차 정비는 자유업으로 운영, 업체별 정비요금에 큰 편차

○ 이륜차 정비 전문성 제고 및 배달기사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**이륜차 정비업 등록제*** **도입** 검토('21.下)

*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,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 게시 등 의무 부여

[2]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1 신규 **(보험료 부담 완화)** "이륜차 보험 협의체"(금융위·금감원, 배달업계, 보험업권)를 구성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* 마련('21.上)

* (예시) (i) 보험료 경감을 위한 **On-Off 보험 출시 확대**, (ii)이륜차 블랙박스 등 **안전장치 장착을 전제로 보험료 할인** 제공 방안

< 그간의 제도개선 상황>

❶ 이륜차보험의 **자기부담 특약** 도입(선택사항) ➔ 영업용 이륜차가 자기부담금 100만원 설정시 **보험료가 최대 39만원 할인(21%**, 188만원→149만원)

❷ 영업용 이륜차가 **가정용(낮은 보험료)으로 가입** 후 **보상받는 사례를 방지**하기 위해 **상품약관 개정** ➔ 보험료 4만원 인하(**2%**, 188만원→184만원)

2 **(대리기사 보험)**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사의 **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**('21.1~)

*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기사의 보험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경향 有 → 중복가입이 나타나는 상황

○ 대리운전한 차량이 렌터카인 경우 렌터카 업체의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**'자동차대여 표준약관' 개정**('21.)

* 음주 등 **불가피한 상황**에서 본인 지배 하에 **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상황**까지 **대여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**은 대여목적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**불합리**

현행	개정안
제7조(회사의 대여계약 해지) 제15조(금지행위) 제18조(보험처리 등) 8. 임대차계약서 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할 때	제7조(회사의 대여계약 해지) 제15조(금지행위) 제18조(보험처리 등) 8. 임대차계약서 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(임차인의 요청으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제외)가 운전을 한 때

3 **(전용 보험상품)** **배달기사, 대리기사** 등 운송 종사자(플랫폼 활용 4륜차)의 교통재해 보장 **보험**("우체국나르미 안전보험") 가입 지원

*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보험료(남자 38,800원, 여자 16,900원)의 50%를 지원하고, 가입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행('21.3. 예정)

**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지속 추진(전속성 폐지·직종 확대 등) → 전용 보험상품은 보완적 역할 담당

4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

◈ (문제점)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취업 등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짐
일감의 배정, 평가 등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,
–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법·제도로 규율하기 어렵고 변화 속도도 매우 빠름

☞ (추진방향) 플랫폼 일자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, 이해당사자의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

[1] 신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

(가칭 "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")

1 **(플랫폼 기업의 책임)** 플랫폼 이용계약 기간, 갱신·변경·해지 절차,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 제고

* 이용계약 변경시 플랫폼 종사자에게 사전고지, 이용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

○ 고객 등과의 분쟁 발생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, 경력에 대한 증명, 개인정보의 보호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

* 플랫폼 기업이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.7%에 불과('19. 인권위)

2 **(정보제공 및 협의의무)**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의 배정, 고객만족도 등의 평가기준·결과 및 활용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,

○ 플랫폼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, 플랫폼 기업의 성실 협의 의무 부여

<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관련 해외사례>

▲ **(프랑스)** '16년 노동법전(Code du travail) 개정하여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 종사자 권리 및 보호 명시적으로 규정

▲ **(이탈리아)** 라치오州는 '19.5.「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률」제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부담하는 모성보호·사회보장제도 적용, 산재시 노동자 보호, 안전교육 강화 등 규정

▲ **(독일)** 11개 플랫폼기업과 금속노조가 참여하여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기업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동수칙(code of conduct) 마련

3 신규 **(플랫폼 신고의무 신설)** 직업소개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·제공플랫폼에 신고 의무 부과(「직업안정법」 개정)

○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수사항 규정

* ▲이용약관을 접근 가능한 방식(App, 홈페이지 게시)과 형태로 제공 ▲노무내용, 노무대가 및 산정기준의 사전통지 ▲노무제공자에게 활동 소득·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 등

[2] 이해당사자 간 대화 · 협력 촉진

1 신규 **(플랫폼 종사자 이해대변)** 자유로운 단체설립과 보수의 지급기준, 평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보장

(가칭 "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")

*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된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권리 행사: 대리기사(전국대리운전노조, '20.7.17), 배달기사(라이더유니온, '20.11.9) 설립신고증 旣 교부

2 **(플랫폼 종사자간 협동조합)**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프리랜서·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설립 지원

* 협동조합 설립 맞춤형 교육·컨설팅 지원(연중),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운영방안 마련('21.3.)

3 **(다층적 논의 활성화)** 그간의 자발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,

○ 경사노위 논의(플랫폼노동委)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대화도 지원

< 사회적 대화 현황 >

합의주체	참여단체	일시	주요 합의내용
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	경총 / 한국노총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부	'20.5.	▪종사자 지원: 사회보험 적용 확대, 맞춤형 교육, 협동조합 지원 제안 ▪플랫폼기업 자율규범(Code of Conduct) 마련
	경총 / 한국노총 라이더유니온 / 정부	'20.9.	▪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(노사정 합의)
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	공익위원(민간)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	'20.10.	▪공정계약, ▪작업조건보장 및 보상, ▪안전보건, ▪개인정보 보호, ▪상설협의체 구성, ▪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

[3] 정부의 지원

1 신규 **(적극적 고용정책 추진)**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('21. 1/4분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)

* 새로운 취업 형태의 정보 수집 및 제공, 능력개발, 고용안정 등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지원 의무 부과

2 신규 **(크라우드워커)**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청년, 여성 등 13만명 참여(~'25) → 적정 보수 및 처우 개선 노력 지속(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등)

* 전반적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

3 **(직업훈련)** 노사단체·협회 등과 연계, 현장 수요를 토대로 특화훈련 지원 확대

* 협회·단체 등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,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·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수요조사 및 특화 훈련모델 개발('21.上)

Ⅴ. 과제별 추진계획

주요과제	담당부처	추진시기
1.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		
1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	고용부	'21. 1/4분기
2 공정한 계약 및 관행 형성	-	-
▸ 표준계약서 제정·활용	고용부 국토부 문체부	지속
▸ 컨설팅 도입	고용부	'21.1.~
▸ 배달업 공정거래 기반 마련	국토부	'21.上.
3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형태 명확화	고용부	'21.
▸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	고용부	'21.
▸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	고용부	'21.下
▸ 사회보험 자격확인	고용부	'21.~
2.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		
1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	고용부	'21.~
2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	-	-
▸ 정부 지원	고용부	'20.12.~
▸ 플랫폼 기업 지원	고용부	'21. 1/4분기
▸ 사업자 등 지원	국토부	'21.~

3.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			
	1 일터에서의 안전 보장	-	-
	▸ 산재예방 대책 수립	고용부	‘21.下
	▸ 이륜차 안전 확보	고용부	‘21.~
	▸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	국토부	‘21.~
	2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	-	-
	▸ 보험료 부담 완화	금융위	‘21.上
	▸ 대리기사 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 등	국토부 공정위 금융위	‘21.1.~
	▸ 플랫폼 전용 보험상품 개발	과기부	‘21.~
4.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			
	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	-	-
	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(플랫폼 종사자 법 제정)	고용부	’21. 1/4분기
	▸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(플랫폼 종사자 법 제정)	고용부	’21. 1/4분기
	▸ 플랫폼 신고의무 신설(직업안정법 개정)	고용부	’21. 1/4분기
	2 이해당사자 간 대화·협력 촉진	-	-
	▸ 플랫폼 종사자 이해대변	고용부	’21. 1/4분기
	▸ 플랫폼 종사자 간 협동조합	기재부	‘21.~
	▸ 다층적 논의 활성화	고용부	지속
	3 정부의 지원	-	-
	▸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(고용정책기본법 개정)	고용부	’21. 1/4분기
	▸ 크라우드워커 처우 개선	과기부	~‘25.
	▸ 직업훈련 확대	고용부	‘21.上.~